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42 호 2024. 2. 22.(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2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30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33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3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35호[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3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6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호 중 “일반직 · 기능직 · 별정직 및 계약직”을 “일반직 · 별정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업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
정·부여할 수 있다.

1. 직위가 있는 6급(상당) 공무원 : 팀장

2. 직위가 없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주무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담당별”을 “팀별”로 “주무담당”을 “주무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분장조정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북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과”를 “재난관리업무담당 팀장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총무업무담당주사”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담당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청 후생시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사담당, 경리담당”을 “감사팀장, 경리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4. 1. 1.자 행정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직위가 있는 6급(상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제3조)

- 기능직 및 계약직(일반직에 포함) 문구 삭제

나. 직위가 있는 6급(상당) 공무원 대외직명 변경(제4조)

- (현행) 주무관 → (변경) 팀장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2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실시계획 신고번호 (년월일)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공사내용
	성명	주소				
제2021-3호 (2021.12.14.)	울산 복구청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어물항 일원	9,845	2024.2.16.	당사·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제2022-14호 (2022.12.27.)	삼대종합 건설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6길 29 1001호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330번지 일원	1,500	2024.2.16.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TTP 제작장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3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공원녹지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창평동 1092번지 외 15필지	하천의 명칭	동천, 창평천
점용 내용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 (보행로 조성 및 수목식재)	점용 면적	계속: 2,135㎡
점용 기간	계속: 2024. 2. 19. ~ 209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3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성하정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89-20번지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공연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2024. 2. 25.(일) 13:00 ~ 18: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3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김연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로48, 106동 402호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공연	점용 면적	○ 33.0m ²
점용 기간	2024. 2. 21.(수) 12:00 ~ 17:00 2024. 3. 3.(일) 12:00 ~ 17: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3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사업면적 5,811.0m²

(변경) 사업면적 5,818.8m²

○ 도로 (변경)

등 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577	15~20	260	(당초) A=4,480.9m ² (변경) A=4,491.9m ²
중로	3	474	11	76	(당초) A=952.3m ² (변경) A=947.1m ²
소로	2	669	8	43	(당초) A=377.8m ² (변경) A=379.8m 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주)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준명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 5 사업기간: 인가일 ~ 2025. 6. 30. (변경없음)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천동	203-3	전	1302.0	130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	신천동	203-40	창	255.3	255.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	신천동	203-8	도	99.0	61.0	울산광역시 북구					(당초)
3	신천동	203-43	도	60.9	60.9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4	신천동	203-9	도	37.3	37.3	울산광역시 북구					
5	신천동	203-10	도	54.0	54.0	울산광역시 북구					
6	신천동	203-11	도	30.1	30.1	울산광역시 북구					
7	신천동	203-12	도	23.3	23.3	울산광역시 북구					(당초)
7	신천동	203-12	도	22.1	22.1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7	신천동	203-44	도	1.2	1.2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8	신천동	203-13	도	17.3	17.3	울산광역시 북구					
9	신천동	203-14	도	86.3	86.3	울산광역시 북구					
10	신천동	203-41	대	132.7	132.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1	신천동	203-30	대	261.9	26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2	신천동	203-31	전	31.2	31.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3	신천동	203-32	전	54.0	54.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4	신천동	203-33	대	49.4	49.4	울산광역시 북구					
15	신천동	203-42	전	180.0	18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6	신천동	203-35	도	39.0	39.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7	신천동	203-36	전	4.7	4.7	울산광역시 북구					
18	신천동	203-37	전	31.3	31.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9	신천동	227-1	전	33.3	33.3	김○권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100-3 새운파래스타운 3동 ○○○호	이○호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186-3 새운파래스타운 ○동 ○○○호		
20	신천동	229-12	전	3.7	3.7	고○림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45, 유곡동 에일린의 뜰 3차 ○○○동 1000호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1	신천동	229-13	전	106.7	106.7	고○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앙길 ○○-2	근저당권	
22	신천동	229-14	전	105.8	105.8	고○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앙길 ○○-2	근저당권	
23	신천동	229-7	전	245.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당초)
23	신천동	229-16	전	239.8	239.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변경)
24	신천동	229-16	전	180.8	180.8	고○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 드림인시티에일린의들 2차 ○○○동 1000호	○○○○신용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	근저당권	(당초)
24	신천동	229-15	전	180.8	180.8	고○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 드림인시티에일린의들 2차 ○○○동 1000호	○○○○신용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	근저당권	(변경)
25	신천동	477-18	대	109.9	109.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6	신천동	477-19	전	5.1	5.1	국 (기획재정부)					
27	신천동	477-20	전	206.2	20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8	신천동	477-22	전	49.5	49.5	권○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				
29	신천동	477-6	도	39.8	39.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0	신천동	477-7	도	114.1	114.1	울산광역시 북구					
31	신천동	477-9	전	280.7	188.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당초)
31	신천동	477-24	전	188.0	188.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변경)
32	신천동	477-10	대	307.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당초)
32	신천동	477-26	대	239.2	239.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변경)
33	신천동	477-11	대	35.9	35.9	관선○○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0	이○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비동 ○○○호		
34	신천동	477-21	대	41.7	41.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5	신천동	477-14	도	100.7	100.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6	신천동	478-1	전	60.0	6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7	신천동	478-5	대	231.0	23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8	신천동	478-16	도	59.0	59.0	울산광역시 북구					
39	신천동	478-17	전	2.0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0	신천동	478-18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복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1	신천동	478-19	대	35.0	20.0	울산광역시					(당초)
41	신천동	478-24	대	22.0	20.0	울산광역시					(변경)
42	신천동	478-20	대	43.0	4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3	신천동	478-11	대	1.0	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4	신천동	478-21	도	146.0	69.0	울산광역시					(당초)
44	신천동	478-25	도	74.0	74.0	울산광역시					(변경)
45	신천동	481-5	도	201.0	16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6	신천동	481-17	도	103.0	11.0	울산광역시 복구					(당초)
46	신천동	481-19	도	12.0	12.0	울산광역시 복구					(변경)
47	신천동	759-32	도	1,760.9	607.5	국 (국토교통부)					
48	신천동	759-33	도	122.9	16.5	국 (국토교통부)					(당초)
48	신천동	759-41	도	16.4	16.4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	신천동	759-26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50	신천동	759-27	도	230.0	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50	신천동	759-42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합 계				7,722.9	5,811.0						(당초)
				7,010.2	5,818.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3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아랫마을길 20-7	달천동 494-8	2024. 2. 22.	건축물 멸실
호계1길 23-5	호계동 886-5	2024. 2. 22.	건축물 멸실
호계7길 37	호계동 663-2	2024. 2. 22.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2.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268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 시달
- 나.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가.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안 제4조)
-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5조)
- 마.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안 제6조, 제7조)
-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 사. 신고포상금 지급, 지급제한, 절차종결, 환수(안 제16조 ~ 제19조)
- 아.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20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2조,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1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52-241-7115, 팩스번호 : 052-241-7109
- 전자우편(E-mail) : jj2eekk@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 출 자 : 기획예산실장

1. 개정이유

- 가.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 시달
- 나.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가.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안 제4조)
-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5조)
- 마.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안 제6조, 제7조)
-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 사. 신고포상금 지급, 지급제한, 절차종결, 환수(안 제16조 ~ 제19조)
- 아.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안 제20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2조, 제26조
-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4. 2월중
- 바. 입법예고 : 2024. 2. 22. ~ 3. 13.(20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따른다. 다만, 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

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8조(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 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m ²)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OO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 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신고 내용

<작성기준>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에 있는 경우 사진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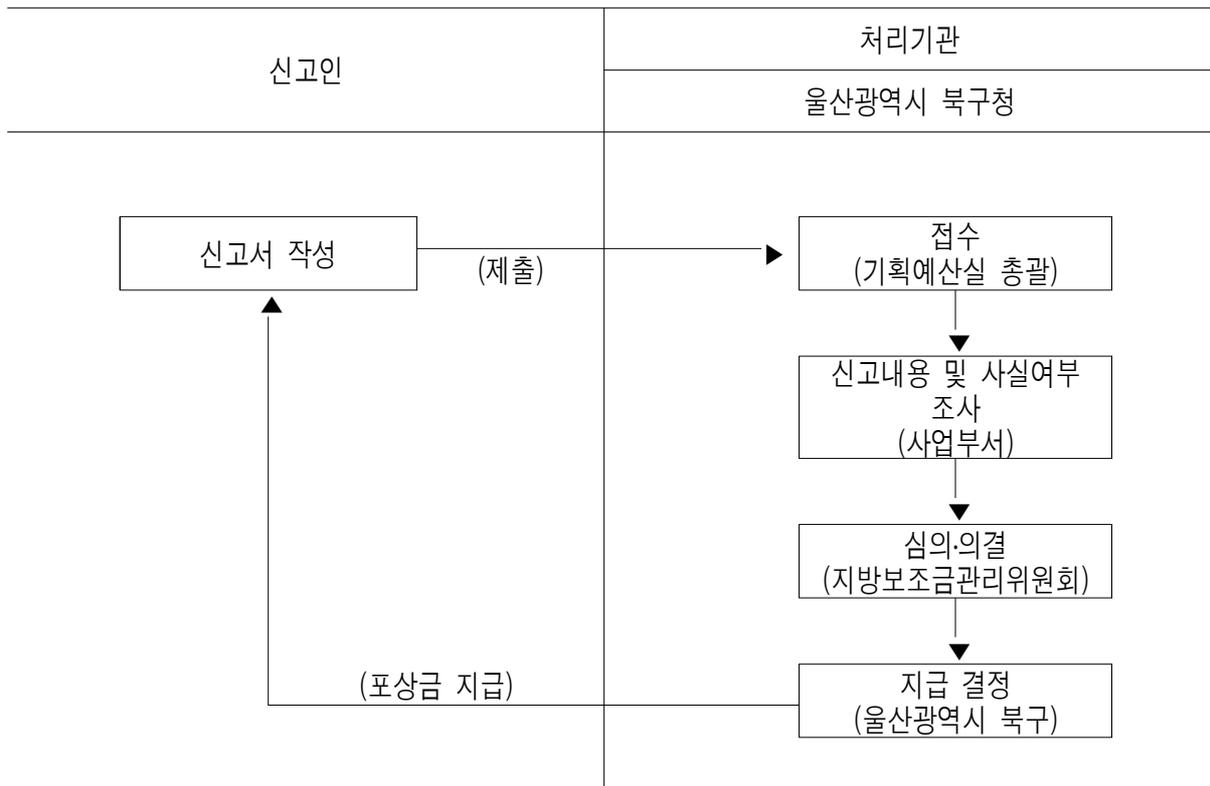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8급 정현주(052-241-711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 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